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2-5. 평가결과 이행여부	0.0
2-6. 실집행 실적	0.0

구분	총평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방식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보조사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효율화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20년(72.3%)에 비해서 '21년(99.1%)에는 실집행률이 크게 개선됨. 동 보조사업의 '23년 예산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지역기반 기업의 참여비율을 늘리고 후원 참여 기업유형 별 보조금 매칭지원 비율 조정이 필요함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매칭비율 조정/ 사업관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후원 참여기업의 후원금과 보조금의 1:1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이나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에 의한 이·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운영의 개선이 필요함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예술의 만남' 내역사업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매칭 보조금의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하며 민간후원재원 마련을 위한 모금액 등의 목표 단계별 로드맵 설정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의, 제18조 기금의 용도,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예술 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및 동법 14조(권한의 위임·위탁)와 동법 시행령 12조(업무의 위탁)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근거가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

제1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20조~3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등기, 정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령동법 시행령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8조(문화예술 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를 이어주고 국고보조금과 기업 후원금의 매칭을 통해 민간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예술창작 기반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68(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함)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제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동 보조사업이 의무조항은 아님. 다만 공공재원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은 한계가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기부)과 민간기부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지원의 근거는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경영 전략체계(ARKO 비전전략 2030)를 통해 각 내역사업들이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예술기부활성화(기업과 예술의 만남)’내역사업은 국고보조금과 기업후원금을 매칭후에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의 후원을 유도하여 예술가(단체) 창작환경 개선한다는 점에서 적절함. ‘문화예술기부활성화(문화로 인사합시다)’내역사업도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며 지역문화메세나 활동지원의 ‘문화예술기부활성화(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문화예술기부활성화(인증후원매개)’ 등의 각 내역사업들이 상위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 ‘예술정책력 실행력 제고’내역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시장 통계를 조사하여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취지는 적절하지만 다른 내역사업들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음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후원매개단체 및 지역메세나 확산 등 후원매개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메세나 협회를 증가 유도 및 이를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후원 기반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지표를 개선하여 ‘19년부터 신규로 민간기업 등 단체의 문화예술후원을 측정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성공건수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민간영역의 유기적인 협력과 예술기부의 민간재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 매칭의 방법으로 민간의 문화예술후원을 계량지표로 측정할 수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민간기업 등 단체의 기부후원 확대를 위해 3개년 실적 평균 79건 대비 100건을 목표 설정 (목표치설정율 : 126%)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 기부금액의 목표를 설정하고 점차 기업의 매칭 비율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음

< 표 1-2-2 >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성과지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관협력 기부건수(건)	목표	(신규)	95	100
	실적	78	96	103
	달성도	-	101.05%	103%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정책 목표와 사업내용이 일치하며 민간문화예술재원 확대와 유도를 위해서 마중물 형태의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예술기부의 민간재원 확장,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매칭 지원의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이 폐지될 경우 민간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 경쟁력에 취약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는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워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21년부터 대기업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대기업 메세나 후원사업을 국고보조로 지원할 경우에는 국고보조 매칭 비율을 차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국고지원을 통해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예술단체와 매칭 후원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지역기업과 지역 메세나협회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필요함
-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의 여지는 없어 보임. 예술분야 기부는 여전히 미약하므로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어 보임
- 동 보조사업은 지정 교부사업과 2건의 공모사업으로 구성되어 행정비용이 따로 측정되지 않음. 다만 문화예술위원회 전체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 평가부분에 행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일반 공모사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어,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선정에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조금의 규모는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규모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사업비 일부 보조의 원칙을 준용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의무화(해당사업, 최대 50%), 단체의 자부담능력을 평가지표로 하여 보조율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보조율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보조율은 기금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
-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18조(예산 편성) 제①항에 의거하여 총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②항에 의거하여 정책상 필요한 전액 지원 사업 등 주관부처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문예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9조(국고보조 등) 등에 의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며,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50%를 의무화하며 단체의 자부담 능력을 평가지표로 하여 국고보조율을 관리하고 있음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50%,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자부담 비율이 18%, ‘매개단체지원사업’은 21%로 선정하고 있으나 점차 자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동 보조사업의 ‘22년 예산은 4,218백만원으로 ’21년(4,553백만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하였고 전체 예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술정책실행력 제고(303백만원)’ ‘문화예술기부활성화(기업과 예술의 만남, 3,510백만원, 문화로 인사합시다, 90백만원), ‘문화예술기부활성화(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180백만원), ‘문화예술기부활성화(인증후원매개 135백만원)’ 등의 각 내역사업들은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20년에는 실집행률이 72.3%로 저조하여 사업관리와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 ‘19년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불용액 57백만원 발생하였는데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55백만원)‘내역사업이 기업의 경영악화 사유 등 기업의 후원금 지원결정 취소에 따라 문예진흥기

금 매칭 지원금 불용이 발생함

- '20년에는 실집행률(72.3%)이 부진하였는데 코로나 19 발생으로 문예진흥기금과 기업후원의 매칭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음. 예술단체의 사업 미 신청, 사업 포기 및 반납 등으로 '문화예술기부활성화('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내역사업 48백만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행사 등 사업 취소로 문예진흥기금과 기업의 후원금 매칭 불가 발생에 따른 불용 및 보조사업 실 집행 저조 발생함
- 2021년에는 비대면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유도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실 집행률을 적절하게 개선하였음

<표 1-4-2>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불용액	실집행률
2019년(결산)	2,680	2,680	2,623	2,598	57	96.9%
2020년(결산)	4,553	4,553	4,505	3,293	48	72.3%
2021년(실적)	4,553	4,553	4,553	4,512	-	99.1%

1-5 사회적가치 실현(가감점)

- 가점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됨. 아래와 같이 사회적 가치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원시설 안전사고가 '17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17년 17건, '21년 1건) 지역관 광일자리센터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함 ('19년 99명, '21년 780명)

< 표 1-5-1>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내용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사회적 약자(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교육복지우선학교의 청소년, 발달장애 예술인, 장애아동, 환자, 아동보호시설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문화권, 행복추구권 존중 및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⑦ 지역사회 활성화와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 전개

공동체 복원	○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사업 중 기업 결연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복원에 기여 하고 있음								
⑩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환경과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실천 방향 제시 ○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사업 중 기업 결연 사업을 통해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음 ▶악극 순회공연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인성 함양이 중요한 아동들에게 쓰레기가 주는 환경파괴와 바다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사회적 목적을 실현								
정량적 증빙자료(과거 수치 비교 등 수치 활용)									
▶ 연도별 민간기업과 예술단체 간 결연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기업 결연	32	33	37	38	38	44	39	38	299
예술지원 매칭펀드	136	93	124	135	126	126	152	200	1,092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29	-	34	27	27	25	25	42	209
총계	197	126	195	200	191	195	216	280	1,600

< 법령 등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보조금 반환, 환수, 시정명령 등) 현황 >

○ 해당 없음

< 보조사업자 대비 행정처분비율 >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보조율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내역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기금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승인 등을 통하여 정액보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제한공모 선정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심의업무 공정 처리규정,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 지원심의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등의 규정을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관리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각종 공모 사업의 지원 및 심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교부조건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등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2005년 제정하여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련한 내부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보조금 집행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는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주기별 공시내용 및 결과, 불성실·허위공시 점검 및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등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하여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행 중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적절함

-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내역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정산 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집행액 발견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실적보고 및 소액 사업을 제외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받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 부정수급 여부를 적절히 감독하고 있음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감점)

< 자체 사업관리 노력 >

- 가점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자체규정인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구비하고 있음

< 표2-4-1> 자체사업관리 노력

주요 개선노력	~2019년	2020~2021년	2022년~	개선효과 (기대효과)
보조사업자 선정	· 지정 및 공모	· 지정 및 공모 (공모 대상 확대)	· 지정 및 공모	· 공모 사업 공공기관 추가 확대 (후원인식 확산 및 매개 단체 유입유도)
집행 및 사후관리	· 현장 및 e-나라도움 실시간 모니터링	· e-나라도움 실시간 모니터링 · 전문가 의견 수렴(5건)	· 현장 및 e-나라도움 실시간 모니터링 · 전문가 의견 반영	· 법과 제도적 문제점 인식 및 해소를 통한 사업관리 개선으로 수요자(기업과 예술 단체)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제공
부정수급 관리	· 직원 모니터링(6건)	· 직원 모니터링(10건)	· 직원 모니터링 강화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감점 >

- 감점 없음

- 2019년 보조사업 가족거래 등 2건,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구매 취소 등 3건, 20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등 1건, 3년간 총 6건의 부정징후 통보를 받았으나, 기한 내 점검을 모두 완료하여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부정확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명됨.

<표 2-4-4 >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내역(2019~2021년)

사업	연도	통보건수	점검여부	점검기한 미준수	시스템 미등록	부정확인 건수	
(세부사업)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2019	보조사업 가족 거래(대표자) 등 2건	점검O	2건	0건	0건	0건
			점검X	0건	0건	0건	0건
	2020	전자세금계산서 구매 취소 등 3건	점검O	3건	0건	0건	0건
			점검X	0건	0건	0건	0건
	202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등 1건	점검O	1건	0건	0건	0건
			점검X	0건	0건	0건	0건
	총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등 6건	X		0건	0건	0건

2-5 과거 평가결과 이행 여부(감점)

- 감점 없음
- 정상추진

2-6 과거 3개년 실집행 실적(감점)

- 감점 없음

< 표 2-6 > 실집행 실적

구분	3년 가중평균 실집행률 (A×20%+B×30%+C×50%)	2019년 (A)	2020년 (B)	2021년 (C)
실집행률	90.6%	96.9%	72.3%*	99.1%
실집행 부진 사유**	* 2020년 실집행률(72.3%) 부진 사유 : 코로나 19 발생으로 문예진흥기금과 기업의 후원금이 매칭 되어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매칭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다수 발생 → 예술단체의 미신청, 사업포기 및 반납 → 2021년 비대면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유도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실집행률 개선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정책 목표와 사업내용이 일치하며 민간문화예술재원 확대와 유도를 위해서 마중물 형태의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매칭 지원의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책의 목표와 로드맵을 정해놓고 단계별로 성과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 '21년부터 대기업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대기업 메세나 후원사업을 국고보조로 지원할 경우에는 국고보조 매칭 비율을 차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국고지원을 통해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예술단체와 매칭 후원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지역기업과 지역 메세나협회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필요함
- 다만 동 보조사업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하였을 때 문예진흥기금의 매칭 예산의 불용이 자주 발생하여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함.
- 지역기반 기업의 참여비율을 늘리고 기업 유형별로 후원금과 보조금의 매칭 비율 조정이 필요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기업의 후원금 대비 매칭 보조금의 차등지원 비율 조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예술기부의 민간재원 확장,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과 성과관리 체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민간분야와의 매칭 기부금을 통한 재원확대 방안도 중요하지만 개인기부 활성화, 후원문화 활성화, 지역메세나기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